

## 「2026 사회적경제기업 ESG 강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ESG 실천을 선도하는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와 함께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역량과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2026 사회적경제기업 ESG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07.06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I 사업 개요

#### □ 공모개요

- 사업명: 2026 사회적경제기업 ESG강화 프로젝트
- 주최: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 주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2026. 7월~11월(5개월)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7.16.(목) 14:00까지
- 지원대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개소

#### ◆ 사회적경제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 받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법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 사업 추천 대상

- ◆ ESG 경영, 말은 많이 들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업
- ◆ 우리 기업의 친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지표)로 증명하고 싶은 기업
- ◆ 경영 비용 절감, 리스크 관리와 함께 ESG도 실현하고 싶은 기업
- ◆ 공공조달, 공기업 납품 등을 위해 ESG진단 지표가 필요한 기업

○ 문의: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성과팀 ☎070-4170-5295

## II 사업 세부내용

### □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2026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ESG실천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ESG 강화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ESG 경영 관심 고취 및 자발전 개선 계기 제공
- 참여 기업의 임팩트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 향후 독자적인 ESG 경영 활동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기여

### □ 지원내용 상세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개소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실행비(사업개발비) 기업당 1천만원 지급
- 컨설팅을 통해 합의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지급(200만원 내외)
- ESG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제공(3회 이내)
- 프로젝트 성과측정
- 프로젝트 내용 및 성과를 정리한 임팩트 보고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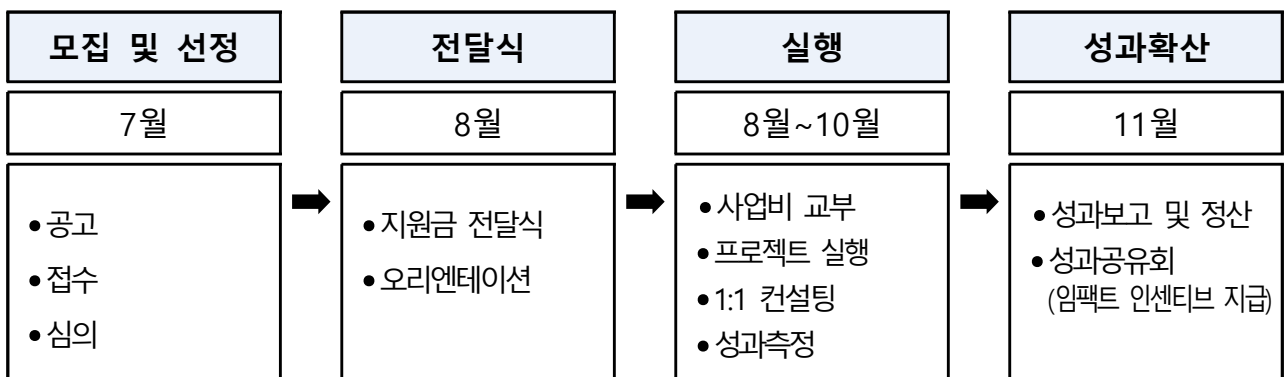
## □ 신청자격

- 업력 1년 이상, 연 평균매출액 5천만원 이상
  - 제품·서비스 개발 상근 인력 2명 이상 보유(대표 포함)
  -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10월까지 신규 고용 인원 1명 이상인 기업
- ※ 상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제한

- ① 주사무소 소재지가 제주도가 아닌 기업
-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약정 해지된 기업
- ③ 2026년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금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선정 및 참여 기업
- ④ 2년이내 동일사업 참여기업
- ⑤ 2026년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타 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비 중복집행 불가)
- ⑥ 휴·폐업중인 기업
- ⑦ 아래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026년 7월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은 법인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법인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

## □ 추진절차



## □ 상세일정

구분	절차	내용
모집 및 선정	공고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공고일로부터~7.16.(목) 14:00까지</li> <li>방법: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li> <li>접수방법: 이메일 fdsa0467@jejuhub.org</li> </ul>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7.20.(월)까지</li> <li>대상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별도 연락</li> </ul>
	대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2026.7.24.(금) *시간 추후 전달</li> <li>내용: 기업의 실행계획 발표(5분) 및 질의응답(10분)</li> <li>심사방법: 내/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li> <li>자료제출: 심사 전달까지 PPT자료 이메일 제출</li> </ul>
전달식 및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2026.7.31.(금) *시간 추후 전달</li> <li>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지원금 전달식</li> <li>사업 소개 및 ESG 및 성과 측정 교육</li> </ul>
프로 젝트 실행	프로젝트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2026.8.3.(월)~2025.10.16.(금)</li> </ul>
	1:1 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프로젝트 실행 기간 내 (3회 이내)</li> </ul>
	성과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프로젝트 실행 기간 내 (컨설팅과 병행 가능)</li> <li>프로젝트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합의 및 증빙 제출</li> </ul>
성과보고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10~11월 중</li> <li>프로젝트 실행 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li> </ul>
성과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11월 중</li> <li>성과보고 및 임팩트 인센티브 지급</li> </ul>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III 심사 및 선정

####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7.16.(목) 14: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
  - 홈페이지 공고문 페이지 내 첨부파일(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접수 이메일: [fdsa0467@jejub.org](mailto:fdsa0467@jejub.org) (문의: 070-4170-5295)
-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①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 참고
②	[서식2] 실행계획서(사업비 사용계획 포함)	서식 참고
③	[서식3]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④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	[서식5] 서약서	
⑥	[증빙1] 2개년도(2024년,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⑦	[증빙2]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⑧	[증빙3] 사업자등록증	
⑨	[증빙4]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⑩	[증빙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발급
⑪	[증빙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5년 12월~현재 (기간 설정 가능)
별도	대면심의용 프로젝트 실행계획 발표 자료(PPT)	대상 기업만

## □ 평가항목

- 서면 심사 : 대상 기준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대면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목적 및 실행계획 (30)	▪ 본 지원사업 취지와 프로젝트 신청 목적 간의 적합성	10
	▪ 프로젝트 실행 전략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역량	10
	▪ 프로젝트 실행 과제에 따른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
사회적가치 창출 (35)	▪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및 기대효과	15
	▪ 기업 내 ESG 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천의 진정성과 내재화 수준	10
	▪ 본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정의의 명확성	10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35)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및 향후 지속 가능성	15
	▪ 프로젝트 종료 후 ESG 진단·개선 지표의 지속적 관리 계획의 타당성	10
	▪ 그 외 정성적·정량적(매출, 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10
<b>합계</b>		<b>100</b>

※ 선정기준: 심사위원 평균 점수 산출, 고득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사업계획 항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적격자가 없을 시 전부 또는 일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70점 이하는 미선정)

## IV

## 사업개발비(프로젝트 실행비) 지출 구성 항목

항	목	지출 예시
직 접 사 업 비	브랜드 개발	(●)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
	공간 조성	(●) 공간 브랜딩, 상품·서비스, 콘텐츠의 전시 및 판매 촉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 간판, 진열장(판매대, 선반 등), 인테리어(디자인 사인물, 소품 등) 등 (×) 일회성 소모품 및 소비재는 구입 불가 (×) 이동가능한 집기류(식기세척기, 냉동·냉장고, 냉난방기, 파라솔 등) 불가
	시제품 및 판매품 제작	(●) 시제품 및 판매품 제작 비용 - 시제품제작 소요 기술료, 디자인비, 설계비, 원료구입비 등 - 시제품 및 샘플, 판매품 제작비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사용 불가
	행사 운영비	(●) 지역사회 협력, 상생 행사 진행 등을 위한 일련의 비용(본 사업비 구성항목에 준하여 집행)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기자재 구입 비용 *총 사업비 30% 이내 편성, 자부담 50% 이상 부담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사업 종료이후 5년간 임의처분 불가 - 기자재 운영계획서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승인하에 구입 가능 (●) 기자재 임차료 *총 사업비 30% 이내 편성가능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업기간 이내까지 지출 가능 - 기자재 운영계획서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승인하에 임차 가능
	시장 조사비	(●)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정성·정량조사비
	마케팅· 광고·	(●) 광고 용역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홍보에 관련한 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및 광고료 등

항	목	지출 예시
	홍보비	- 제품전시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비용 등 (●) 대관, 대여, 행사 물품 구매 및 제작 등 행사에 관련한 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집,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인건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허용 - 서비스상품 개발 관련 용역, 시제품 개발시 전문 분야 한시적 참여 가능 ※ 반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총 사업비의 15% 이내 사용 가능 (×) 단, 일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용 불가
	교육비	(●) 사업과 관련한 세미나, 외부 전문가 및 교육기관 실시 교육비 (●) 사업과 관련한 직원 교육 및 훈련비 (●) 사업과 관련한 강의, 워크숍 진행시 강사수당 또는 퍼실리테이터 수당 지급 등
간접사업비	일반수용비	(●) 사업에 관련한 사무용품 구입 등 -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및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불가 항목 : 각종 사용료, 비품수선비, 관리비, 공공요금(우편, 전화 등),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정보사용료(유지보수비포함), 회계정산 비용(법인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 목적 지출 불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인사, 노무, 재무, 경영컨설팅 비용,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사업 관련성이 없는 발송비
		(●) 사업과 관련한 부가세 집행 - 직접사업비 용역 계약에 의한 부가세, 타행이체 시 은행 송금수수료, 직접사업비와 관련 있는 택배비 등 ※ 부가세 집행의 경우 1차로 기업 자부담 금액에서 선집행 처리하며, 필요시 필요금액 만큼 사업비 통장으로 여입하여 집행하여야 함 ※ 제주도 지리적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전체 상품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 금액에서 부가세 금액만 일반수용비로 분리함
<p>※ 기타 세부 사용기준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논의</p> <p>※ 간접사업비는 프로젝트 실행사업비의 15% 이내 범위로 사용 가능</p> <p>※ 전체 항목 중 개별단위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집행 지양</p> <p>※ 사업비는 자부담 지출이 우선이며, 향후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잔액(예금이자 포함)이 발생할 경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계좌로 전액 반납하여야 함</p>		

## V 기타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비는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로만 작성하며 부가세 포함
- 사업화에 필요한 간접비용(회의비, 사업관리비 등)은 자부담 편성

### □ 사업비 사용 제한

- 선정 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회계감사, 소송대리 비용
- 관리비, 공공요금(우편, 전화 등),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정보사용료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 기타 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심사 및 컨설팅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 신청 및 심사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심사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을 시, 전부 또는 일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업 협조사항

- 교부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여 집행하고, 최종 정산하여야 함
- 선정기업 대표 및 책임 있는 임원이 반드시 전체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진행에 있어 센터 담당자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간 기업현황 파악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되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을 적용함

## V 불임

- [서식1] 참여신청서
- [서식2] 실행 계획서
- [서식3] 기업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서식5] 서약서